

2002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734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12. 3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12. 3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12. 11

고 성 군 수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기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금액 : 4,860천원
- 조성방법 :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
- 기금의 용도
 -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·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
 -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·연구사업
 -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
 - 기금의 관리·운용에 수반되는 부대경비 등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고성군식품진흥기금 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면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매년 그 계획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2002년도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며,

-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에 갈음한 과징금을 징수하여 486만원의 기금을 조성한 것으로, 식품위생 및 국민 영양에 관한 조사·연구 사업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므로 동 계획안 제출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- 그러나 본 기금 사용계획안이 기금의 사용 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었는지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486만원의 적은 기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
- 답 : 기금심의위원회는 부군수, 보건소장 등 공무원 당연직 2명과 식품 위생관련 전문가 3명 등 5인으로 구성되며, 식품진흥기금 심의 뿐 아니라 식품진흥기금 용자대상자 선정 등도 같이 심의하고 있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